

신청자격

- 단독주택(다중·다가구주택 포함): 건축물 소유자
-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주택)
 - 1) 전용부분: 개별세대 소유자
 - 2) 공용부분: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(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)
-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
 - 1) 단,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

지원절차

신청 단계	지원자격 확인	- 지원대상: 안전등급 미흡·불량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한 건축물	신청인, 자치구
	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신청	- 신청서 제출 (추후 허가·신고 필증 첨부) - 匾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	신청인 → 구 → 시
	보조금 심의위원회	- 서울시 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기준, 현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	서울시
	결과 통보	- 심의 결과 안내 및 지원 결정금액 통보	시 → 구 → 신청인
사업 추진 단계	보조금 교부	-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(보조금 소진 시까지)	서울시 → 자치구
	공사 시행	- 관련 인·허가 절차 진행 -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공사 시행	신청인
	공사 완료 보고	-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 (사용승인서 첨부)	신청인 → 자치구
	비용 지원	- 완료 사업 비용 지원 적정여부 검토 후 비용 지급	자치구 → 신청인

서울시 홈페이지에서 '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'을 검색해보세요!



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



안전점검부터 보수·보강까지 한번에!
귀하의 건물에 안전이 배송될 예정입니다!

STEP 1.
전문가 안전점검



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,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신이 사는 집의 안전 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
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

점검대상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

※ 제외 대상 :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(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설물 등)

점검내용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

- 건물 기울음, 균열, 변형 등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하며, 일상에서 궁금했던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축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 -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, 안전점검 신청인에게 건축물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우수/양호/보통/미흡/불량 5단계로 구분하여 판정

신청문의 구청 건축과(건축안전센터) ☎ 02-120(다산콜센터)

점검비용 무료

※ 전문가 안전점검(1차 점검) 결과 안전등급 **미흡·불량** 판정 시, 보다 상세한 위험요소 파악 및 보수·보강 방안 제시를 위하여 **전문기관에 의한 점검(2차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)**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. (소요비용 예산한도 내 전액 지원)
※ 서울시 보수·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**정밀안전진단**을 받아야 합니다. (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필요)

STEP 2.
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신청



지원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(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) 중 ①, ②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

- ①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점검 등급이 미흡·불량으로, 정밀점검·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
- ②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

지원내용 구조보강 및 긴급 안전조치 비용 보조

- 주요 구조체*의 보수·보강 비용을 지원**하며, 구조체의 보수·보강이 없는 마감재 개선(장판, 창호교체 등) 및 에너지 관련 설비개선(단열, 난방 공사 등), 거주 공간 개선(욕실, 주방 개량 등) 등은 제외
- *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 등 구조부
- ** 보수·보강 시 수반되는 필수 공사(마감, 도배 등)도 지원(지원 비용의 20% 이내)
- 서울시 및 자치구는 동당 각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초과 금액에 한해서는 건축물 관리자(소유자) 부담

구분		지원비율	최대 지원금액
단독주택(다중·다가주택 포함) 및 일반건축물(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)		전체 공사비용 중 최대 50% 까지 지원 ¹⁾	1,200만원
공동주택 (다세대·연립주택) 및 집합건축물	전용 부분		세대별 500만원
	공용 부분	1,700만원	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- 1) 예시① 공사비 6,000만원 = 시·구 보조금 2,400만원 + 소유자 부담 3,600만원 (보수·보강 지원금 2,400만원 중 수반되는 필수 공사비 최대 480만원 포함)
예시② 공사비 3,000만원 = 시·구 보조금 1,500만원 + 소유자 부담 1,500만원 (보수·보강 지원금 1,500만원 중 수반되는 필수 공사비 최대 300만원 포함)
예시③ 공사비 2,000만원 = 시·구 보조금 1,000만원 + 소유자 부담 1,000만원 (보수·보강 지원금 1,000만원 중 수반되는 필수 공사비 최대 200만원 포함)